

의안번호	2220976
의 퇴 인	조인철의원
회 답 일	2026. 9. 11.
추계번호	26B4456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1조(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)	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·폭력정보,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불법정보,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(이하 “청소년유해정보”라 한다)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(제1항) ※ 청소년유행정보에 ‘인종 등을 이유로 한 폭력·차별 선동 및 증오심 조장 정보, 청소년유해매체물’ 포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1조(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)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현행법¹⁾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·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를 “청소년유해정보”로 규정하고 해당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보급 및 기술개발, 교육 및 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
-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현행법 등에 따라 청소년유해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물의 차단 등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지원, 청소년유해정보 예방관리 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

[표 1]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청소년유해정보 예방 및 차단 등 관련 사업 사례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사업내용	2026년
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마련	- (부가통신사업자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) 웹하드 상시점검 결과분석 및 현장조사, 웹하드 기술적 조치 상시점검 및 모니터링, 웹하드 상시점검 및 전문가협의체 등 운영 - (DNA 성능평가 제도) 동영상 불법촬영물 성능평가 기준데이터 분석 및 정제 도구 개발, 이미지 불법촬영물 비교식별기술 성능평가 체계 개발 - (디지털성범죄물 비교식별 기술도입 기술지원 체계구축) 비교식별기술 개발 및 유지보수용 테스트베드 구축, 디지털성범죄물 비교식별기술 고도화 및 검증기술 개발, 조치의무사업자 기술지원 및 운용 관리, 이미지 비교식별기술 보급 및 기술 지원	4,991
클린인터넷 이용환경조성	아동청소년들이 유해정보로부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·모바일환경 조성 -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및 사이버언어폭력 예방관리 시스템 운영, 유해 SNS플랫폼 모니터링, 청소년보호 조치 이행여부 상시점검 등	2,291
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	전 국민 맞춤형 디지털윤리·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·공모전 등 대국민 인식 제고 캠페인 활동을 통해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 확산 및 역기능 피해 예방 - 청소년 대상 SNS 중독 등을 포함한 디지털 역기능 관련 교육 및 홍보 등	5,219

자료: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(II-1)

1) 제41조(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)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·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(이하 “청소년유해정보”라 한다)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1.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
2.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
3.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
4.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- 개정안은 청소년유해정보를 ‘인종 등을 이유로 한 폭력·차별 선동 및 증오심 조장 정보²⁾, 「청소년 보호법」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³⁾’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, 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사업 확대 또는 신규 사업 추진 여부 및 규모 등을 알 수 없으며, 사업의 내용 및 추진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, 개정안에 따른 소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2) 제44조의7(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) 2의2. 공공연하게 인종, 국가, 지역, 성별, 장애, 연령, 사회적 신분,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(해당 집단에 소속된 개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

가.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

나.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

3)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3. “청소년유해매체물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

나.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최동완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동완	02-6788-3746	dongwaniii@nabo.go.kr